

# **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의안 번호	1532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시 : 2013. 07. .  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

## **1. 제안이유**

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심의 제외규정 보완으로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출장 의원수의 적합성 등 심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기 위함.

## **2. 주요내용**

-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 조정(안 제5조)
  - 현행 “4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제2항”을  
→ “의원이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개정

## **3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66조**

## **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**

## **5. 기타 참고자료 : 없음**

충주시의회 규칙 제 호

## **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중 “4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 제2항” 을 “의원이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<u>4인 이하의 의원이</u> <u>제2조제2항</u>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의원</u> ----- <u>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</u> ----- ----- ----</p>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# 지방자치법

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**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**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7.14>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14>